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사회복지시설 예·결산서 공고 업무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○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○○○과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·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10조 및 제19조에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세입·세출명세서 및 세입·세출 결산서를 20일 이내에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, 각 세입·세출명세서와 세입·세출결산서의 공고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○○○과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 예산, 결산서를 공고하지 않거나,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○○○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○○○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